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민정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(안 제16조의2제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세 진)